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비공식번역)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 의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오사카시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함과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의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조례에서 "헤이트 스피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표현 활동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 (“다”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인종 혹은 민족에 관하여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 또는 해당 개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이하 "특정인 등"이라 한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나 특정인 등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다 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 혹은 차별 의식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

(2) 표현의 내용 또는 표현 활동의 상태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정인 등을 상당히 모멸하거나 비방하는 것

나 특정인 등(해당 특정인 등이 집단일 때는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의 상당수)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3)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표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듯한 장소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것

② 이 조례에서 말하는 "표현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 광 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그 밖에 물건 판매 혹은 반포 또는 상영

(2) 인터넷 외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그림 또는 화상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시청이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3) 그 밖에 다른 표현 활동의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

③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 통근하거나 혹은 통학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시민 등"이란 시민 또는 인종 혹은 민족에 관련된 특정 속성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계발)

제 3 조 본 오사카시는 헤이트 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 의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헤이트 스피치로 인한 인권 침해에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발한다.

(조치 등의 기본 원칙)

제 4 조 다음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공표는,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 관련된 구제 제도 등의 구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이 구제 제도 등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확산 방지의 조치 및 인식 등의 공표)

제 5 조 시장은 다음의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안의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표현 활동에 관련된 표현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는 점, 표현 내용의 개요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및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표한다. 다만,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제 1 조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표현 활동을 벌였으나 소재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서 열린 표현 활동

(2) 본 오사카시의 구역 외에서 열린 표현 활동 (본 오사카시의 구역 내에서 이루어 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 에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표현의 내용이 시민 등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표현 활동

나 “가”의 표현 활동 이외의 표현 활동 중, 본 오사카시 구역 내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을 본 오사카시 구역 내에 확산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언은, 표현 활동이 자신들에게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특정인 등인 시민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

③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개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자에게 공표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개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공개 내용이 다음 조 제 3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이하"심사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대상으로 한 공개 내용과 동일하고, 심사회에서 해당 공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 항의 본문의 의견은 시장이 구두로 진술하는 것을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해당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 ⑥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그 밖에 오사카시의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심사회의 의견 청취)

제 6 조 시장은 전조 제 2 항의 요구가 있었을 때 또는 동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동조 제 2 항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련된 표현 활동이 동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표현 활동이 전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 (2) 해당 표현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일 것
- ② 시장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치 및 공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할 때 그 외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심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서 해당 의견의 내용을 공개한다.

(심사회의 설치)

제 7 조 전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소속되는 것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하거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심사회를 둔다.

② 심사회는, 전항이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하는 동시에 시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심사회의 조직)

제 8 조 심사회는 위원 5 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 심사회의 위원은 시장이 학식 경험자 그 외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심사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1 회에 한하여 재임될 수 있다.

⑤ 심사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동일하다.

⑥ 심사회의 위원은 임기 기간 중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은 심사회 위원이 전 2 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가 있다.

(심사회의 조사 심의 절차)

제 9 조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조사 심의 대상이 된 표현 활동에 관한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한 시민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 그 외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회는 조사 심의 대상이 된 표현 활동에 관한 신청인 또는 해당 표현 활동을 행한 자(이하 이들을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는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관계인에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회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의 본문의 경우 관계인은 심사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⑤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지명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2)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것

(3)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것

⑥ 심사회가 실시하는 조사 심의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 7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공개한다.

(심사회에 관한 규정의 위임)

제 10 조 전 3 조에 정하는 것 외에 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 조사 심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적용 상의 주의)

제 11 조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그 외 다른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의 세목)

제 12 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부터 제 6 조 및 다음 항의 규정의 시행 기일은 시장이 정한다.

2 제 4 조부터 제 6 조의 규정은 이들 규정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표현 활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시장은 국가가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법 제도를 정비한 경우 해당 제도의 내용 및 이 조례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역주 : 2016 년 1 월 18 일 공포. 2016 년 7 월 1 일 전면시행

Unofficial translation by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비공식번역)

(취지)

제 1 조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2016 년 오사카시 조례 제 1 호. 이하"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 2 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조례의 예에 따른다.

(신청)

제 3 조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 1 호 양식의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제출은 송부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회 부여 방식)

제 4 조 시장은 조례 제 5 조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한 자에게 의견 진술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 해당 의견을 기재한 서면(이하"의견서"라 한다.)및 증거 제출 기한(동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구두로 해당 의견을 진술할 기회(이하"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라고 한다.)를 주는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헤이트 스피치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 내용과 이유

(2)의견서 및 증거 제출처, 제출 기한

(3)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그 뜻,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

(4) 안전 번호(안전마다 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제 2 호 양식의 기회 부여 통지서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의견서에 사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그 밖에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안전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 등의 변경)

제 5 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중 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받은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부득이 한 이유로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일 전날까지 이유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 의견 진술 기회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구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기일 또는 장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일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 또는 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인식 등의 공표 방법)

제 6 조 조례 제 5 조 제 6 항의 시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홍보지에 게재하는 방법 및 시청 기타 시 관계 공서에서 열람 제공하는 방법 중 사안별로 공표 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의 세목)

제 7 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민 국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호 양식(제 3 조 관계)

신청서

헤이세이 년 월 일

오사카 시장

신청자 주소 또는 거소 (우)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사무소 소재지]

성명 및 연락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우리(들)에 관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1 에 기재된 표현활동에 대해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표현 활동의 일시·장소·내용

2 표현 활동을 행한 자(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할 것)

3 상기 1 및 2 에 관련된 정보(필요 시 기재할 것)

4 상기 1 에서 3 까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증거 물품을 첨부할 것)

제 2 호 양식(제 4 조 관계)

기회 부여 통지서

제 호
헤이세이 년 월 일

귀하

오사카시장 인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안건 번호	
공표 내용	
공표 이유	
의견서 및 유리한 증거의 제출처	전화()
의견서 및 유리한 증거의 제출 기한(필착)	헤이세이 년 월 일()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여부	
출두해야 할 일시	헤이세이 년 월 일()
출두할 장소	전화()

주의 출두 시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